관광문화연구소 규정

제정 2010. 06. 01.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본 연구소는 상지대학교 부설 관광문화연구소(이하 "연구소"라 한다.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연구소는 관광 및 문화 분야의 제 현상을 관찰하고, 분석하며, 예측할 목적으로 종합사회과학적 방법론 및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, 관련 분야의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학술적 연구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소재) 본 연구소는 상지대학교 내에 둔다.

제4조(사업)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관광 및 문화에 관한 조사 및 연구
2. 각종 자료의 수집·정리·간행 및 논문집·단행본의 발간
3. 공개강연, 연구발표회 및 학술토론회 개최
4. 타 연구기관 및 관련 학회와의 연구교류
5. 외부 위탁연구의 수행
6. 기타 연구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

제2장 조직

제5조(연구소장) ① 연구소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.
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
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본 연구소에는 연구원의 임면, 연구업무,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,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 운영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단 부득이한 경우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.
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④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5-7명으로 한다.
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동일학과 교수가 과반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7조(간사) ①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.
② 간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별도의 사무직원을 임면할 수 있다.

제8조(연구원) 연구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상지대학교 연구교수·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.

제9조(연구보조원) 연구원의 업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, 연구소장이 임면한다.

제3장 회의

제10조(회의) ① 연구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정리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③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의 개정과 연구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된다.

제4장 재정

제11조(재정)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교외 연구비와 수탁 연구비
2. 교내 연구비
3. 정부·대학의 보조금 및 기타 기부금
4. 기타 수입

제12조(회계년도 및 예산 결산) ①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.
②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장 기 타

제13조(규정 개정 및 해산) ① 본 연구소의 규정 개정 및 해산은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다.
② 연구소가 해산되는 경우에 그 재산은 상지대학교에 귀속된다.

제14조(준용)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교수·연구원임용규정 및 부설연구소(원)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5조(지침 등) 연구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695, 2010.6.3)
본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